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5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개정이유

-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뿐만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·임대하는 경우도 도세를 면제
-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·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·임대한 경우 면제된 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

□ 면제세목 : 취득세, 등록세

□ 근거법령 :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

□ 기타참고자료 : 별첨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(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) 제1항 제4호중 '설치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'를 '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(분양·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'로 하고, 제2항 중 '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'을 '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·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·임대한 경우에는'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